

해외건설협회와 한국철도협회간 업무협력 약정서

해외건설협회와 한국철도협회는 철도산업발전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원천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이 협약은 "해외건설협회"와 "한국철도협회"(이하 양기관)가 철도산업발전 및 철도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의 범위)

양기관은 각호의 협력업무를 제휴하여 진행하기로 한다.

- ① 해외철도 건설지식과 해외철도 사업정보의 교환 및 상호협력
- ② 해외철도분야 신규 시장 개척 및 발굴 협력
- ③ 해외철도분야 공동 연구 및 해외철도 프로젝트에 관한 협력
- ④ 해외철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분야 협력
- ⑤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

제3조(정보자료 협조)

양 기관은 정기간행물 및 기타 발간·습득 자료를 상호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제4조(비용부담)

양기관의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, 분담한다.

제5조(협약기간)

본 협약은 양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발생하며,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된다.

제6조(비밀유지)

- ① 상호 교류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기관의 정보 중 비밀유지를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
- ② 양기관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유지된다.

제7조(협의조정)

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협의를 통해 조정한다.

제8조(협약의 해지)

- ① 양기관은 상대방이 특별한 사유없이 본 협약에서 규정한 제반의무를 다하지 아니했을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② 양기관은 부도, 파산, 해산된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③ 양기관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9조(기타사항)

- ① 양기관의 제2조 각 호의 협력사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
- ② 본 협약서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양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2. 5. 23

인
신승근

대
인 삼진

해 외 건 설 협 회
회 장 최 재 덕

한 국 철 도 협 회
회 장 김 광 재